

	교양교육 운영위원회 규정		문서번호	5-1-45		
			제정일	2020. 03. 13.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1/1	관리 부서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양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운영위원회를 두며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기준 수립
2. 교양교육과정 신설, 조정, 평가 및 폐지
3. 교양교육과정 지원 및 운영부서 간 조정
4. 성과 확인·점검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개선
5. 그 밖의 교양교육 운영과 관련되는 주요 사항

제5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관계부서와의 협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교양교육 운영위원회 규정	문서번호	5-1-45		
		제정일	2020. 03. 13.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2/1	관리 부서	교무처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